



www.trithucviet.com.vn

Member of
Allinial
GLOBAL®
An association of legally independent firms

TRI THUC VIET (TTV) 유한책임회사

2026년 6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WWW.TRITHUCVIET.GROUP



INFO@TRITHUCVIET.COM.VN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144/2026/NĐ-CP호 (2026.05.0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제359/2025/NĐ-CP호로 개정)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5.05; 시행일: 2026.06.20)
2. 시행령 제245/2026/NĐ-CP호 (2026.06.27) — 2026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공포일: 2026.06.27; 시행일: 2026.06.27)

제2부: 노동 · 임금 · 보험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제09/2026/TT-BNV호 (2026.05.15) —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 해외 파견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21/2021/TT-BLĐTBXH호의 일부 개정, 내무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5.15; 시행일: 2026.06.30)

제3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39/2026/NĐ-CP호 (2026.06.26) — 상업촉진활동에 관한 상법 시행령 제81/2018/NĐ-CP호(제128/2024/NĐ-CP호로 개정)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2. 시행령 제127/2026/NĐ-CP호 (2026.04.06) — 할랄(Halal) 제품·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발전 정책 (공포일: 2026.04.06; 시행일: 2026.06.01)
3. 시행령 제193/2026/NĐ-CP호 (2026.06.01)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01; 시행일: 2026.07.01)
4. 시행규칙 제73/2026/TT-BTC호 (2026.06.25)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업무에 사용되는 서식 체계에 관한 규정, 재무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25; 시행일: 2026.07.01)

제4부: 기타 법령 정책

1. 결의 제141/NQ-CP호 (2026.06.01) —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법률의 정책에 관한 정부 결의 (공포일: 2026.06.01; 시행일: 2026.06.01)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144/2026/NĐ-CP호 (2026.05.0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제359/2025/NĐ-CP호로 개정)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5.05; 시행일: 2026.06.20)

500만 동 이상 할부·후불 구매 시 비현금 결제 증빙에 관한 신규 규정: 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500만 동 이상의 할부·후불 구매 건도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 구매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할부·후불 구매 재화·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는 서면 구매계약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및 해당 재화·서비스의 비현금 결제 증빙을 근거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습니다.
- 계약서 또는 계약 부속서상 결제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계약 부속서상 결제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결제의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증빙이 없는 재화·서비스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감액 조정 이후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증빙을 확보한 과세기간에 그 증빙이 있는 재화·서비스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45/2026/ND-CP호 (2026.06.27) — 2026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공포일: 2026.06.27; 시행일: 2026.06.27)

2026년도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중 2026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배분 대상 부가가치세액 및 건별 발생 납부세액 포함)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5개월입니다.

개인사업자(사업 가구·사업 개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5개월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5월분 과세기간: 늦어도 2026년 11월 20일까지;
- 2026년 6월, 7월, 8월, 9월분 과세기간: 늦어도 2026년 12월 21일까지;
- 2026년 2분기 과세기간: 늦어도 2026년 11월 2일까지;
- 2026년 3분기 과세기간: 늦어도 2026년 12월 30일까지.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45/2026/ND-CP호 (2026.06.27) — 2026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공포일: 2026.06.27; 시행일: 2026.06.27)

유의사항: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6년 2분기 법인세 예납분에 대한 연장 기간은 3개월, 2026년 3분기 법인세 예납분에 대한 연장 기간은 2개월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2분기 법인세 예납분: 늦어도 2026년 11월 2일까지;
- 2026년 3분기 법인세 예납분: 늦어도 2026년 12월 30일까지.

(3) 2026년도 납부 발생 토지임대료의 50%에 대한 연장 기간은 5개월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로부터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서 또는 계약에 따라 연간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직접 토지를 임차 중인 납세자의 2026년도 토지임대료 발생액의 50%(2026년 제1기 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늦어도 2026년 11월 2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본 항 a호의 규정은 납세자가 국가와 복수의 토지임대 결정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시행령 제245/2026/ND-CP호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경제 업종·분야를 포함한 여러 생산·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계속)

제2부: 노동 · 임금 · 보험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제09/2026/TT-BNV호 (2026.05.15) —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 해외 파견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21/2021/TT-BLĐTBXH호의 일부 개정, 내무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5.15; 시행일: 2026.06.30)

근로자 해외 파견이 수용국 법률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09/2026/TT-BNV호 제1조 제2항(시행규칙 제21/2021/TT-BLĐTBXH호 제5조 개정)은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파견이 근로자 수용국의 법률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말레이시아 및 대만(중국) 시장의 경우, 증명서류는 말레이시아 또는 대만(중국) 주재 베트남 대표기관의 베트남 근로자 채용서류 심사확인서 사본 1부입니다.

(2) 일본 시장 및 한국 시장의 연근해 어선원 프로그램의 경우:

- 외국 측 근로자 수용 주체가 사용자인 경우, 증명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업무에 부합하는 사업 분야가 명시된, 관할기관이 사용자에게 발급한 사업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의 사본 1부(베트남어 번역본 첨부)입니다;

- 근로자 수용 주체가 직업소개기관인 경우, 증명서류는 수용국 관할기관이 직업소개기관에 발급 또는 확인한, 직업소개 서비스가 사업 분야에 포함됨을 명시한 허가증 사본 1부(베트남어 번역본 첨부), 또는 (일본 시장의 경우) 체결된 협력 약정에 따라 일본 관할기관이 베트남 측에 제공하는 기능실습생·특정기능 근로자·육성취업 외국인의 수용이 허가된 관리단체·기관의 명단입니다.

(계속)

제2부: 노동 · 임금 · 보험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제09/2026/TT-BNV 호 (2026.05.15) —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 해외 파견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21/2021/TT-BLĐTBXH 호의 일부 개정, 내무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5.15; 시행일: 2026.06.30)

(3) 기타 국가·지역의 경우, 외국 측 근로자 수용 주체가 사용자인 때에는 증명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업무에 부합하는 사업 분야가 명시된, 관할기관이 사용자에게 발급한 사업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의 사본 1부(베트남어 번역본 첨부);
- 수용국 관할기관이 해당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가한 문서의 사본 1부, 또는 해당 규정이 있는 수용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되는 직종·업무 목록, 또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이 수용국 법률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관할기관 문서의 사본 1부(베트남어 번역본 첨부).

(4) 위 (3)에서 언급한 국가·지역의 경우, 외국 측 근로자 수용 주체가 직업소개기관인 때에는 증명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직업소개 서비스가 사업 분야에 포함됨을 명시한, 관할기관이 직업소개기관에 발급 또는 확인한 사업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의 사본 1부(베트남어 번역본 첨부);
- 사용자가 직업소개기관에 베트남 근로자 채용을 의뢰한 협력약정서, 요청 문서 또는 위임 문서의 사본 1부(베트남어 번역본 첨부);
- 위 (3)에 규정된 사용자에 대한 증명서류.

(계속)

제3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39/2026/ND-CP 호 (2026.06.26) — 상업촉진활동에 관한 상법 시행령 제81/2018/ND-CP 호(제128/2024/ND-CP 호로 개정)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이에 따라, 판촉 대상 재화·서비스 및 판촉용 재화·서비스는 상법 및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판촉 대상 및 판촉용 재화·서비스에는 주류, 복권, 담배, 모유대체품, 처방의약품(의약품 유통업자 대상 판촉의 경우 제외), 공립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공립 교육기관·공립 직업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 베트남 내 유통이 금지된 재화·서비스 및 상법 제100조에 따라 판촉이 금지된 재화·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금은 판촉용 재화·서비스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81/2018호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판촉 형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종전 규정: 판촉 대상 재화·서비스 및 판촉용 재화·서비스는 상법 및 다음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판촉 대상 재화·서비스에는 주류, 복권, 담배, 모유대체품, 보건부 규정에 따라 유통이 허가된 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치료 의약품(의약품 유통업자 대상 판촉의 경우 제외), 공립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공립 교육기관·공립 직업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 베트남 내 유통이 금지된 재화·서비스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판촉이 금지된 재화·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39/2026/ND-CP 호 (2026.06.26) — 상업촉진활동에 관한 상법 시행령 제81/2018/ND-CP 호(제128/2024/ND-CP 호로 개정)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 판촉용 재화·서비스에는 주류, 복권, 담배, 보건부 규정에 따라 유통이 허가된 의약품에 포함된 인체용 치료 의약품(의약품 유통업자 대상 판촉의 경우 제외), 베트남 내 유통이 금지된 재화·서비스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판촉이 금지된 재화·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금은 판촉용 재화·서비스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81/2018호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판촉 형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3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127/2026/ND-CP 호 (2026.04.06) — 할랄(Halal) 제품·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발전 정책 (공포일: 2026.04.06; 시행일: 2026.06.01)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할랄 제품·서비스 표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할랄 제품·서비스 표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할랄 제품·서비스에 관한 국가표준은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공포·적용됩니다. 할랄 제품·서비스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과정에는 관련 내용의 자문·심사 과정에서 민족·종교부 대표 및 할랄 요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무슬림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할랄 제품·서비스에 관한 국제표준, 지역표준, 외국표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수출용 할랄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시설은 수입 조직·개인과 요구사항,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할랄 제품·서비스 표준을 적용합니다;

- 내수용 할랄 제품·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 시설은 국가표준, 베트남이 회원국이거나 상호인정 합의를 체결한 국제기구의 표준, 국제표준, 지역표준 또는 이슬람 국가들의 할랄 제품·서비스 국가표준을 적용합니다.

(3) 생산·사업 조직 및 개인은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 국제표준, 지역표준 또는 상응하는 이슬람 국가의 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경우, 자사의 할랄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업표준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업표준은 국제적·지역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할랄 표준의 일반 원칙 및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 (1), (2), (3)의 규정에 따라 할랄 제품·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준은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제3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3. 시행령 제193/2026/ND-CP 호 (2026.06.01)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01; 시행일: 2026.07.01)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승인 신청 서류
이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승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됩니다:

- 정산 심사 주관기관은 정산 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 승인 권한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승인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총리 규정에 따른 공공우편 서비스, 기업·개인의 서비스 위탁, 법령에 따른 위임 또는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합니다). 정산 승인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 정산 심사 결과 보고서.
- + 정산 승인 결정문 초안(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독립 소프로젝트, 공사, 공사 항목).
- + 정산 승인 권한자가 요구하는 경우, 심사 주관기관의 정산 심사 서류.
- 정산 심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요 및 프로젝트 투자·시행 과정에서 관할기관이 결정한 사항.
 - + 본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 결과 요약.
 -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승인 금액에 대한 건의.
 -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이후 잔존하는 투자자본, 자산 및 채권채무, 잔여 자재·재료·설비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안 건의.

- 정산 승인 결정문은 다음 기관·단위에 송부됩니다: 투자주, 투자주의 상급 관리기관, 지급기관(국방부·공안부의 국가기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지급 통제를 위임받은 기관), 프로젝트 투자 승인 결정 권한자, 정산 심사 주관기관, 그리고 국가 중요 프로젝트 및 총리가 투자를 결정한 프로젝트의 경우 총리 및 재무부.

(계속)

제3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4. 시행규칙 제73/2026/TT-BTC 호 (2026.06.25)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업무에

사용되는 서식 체계에 관한 규정, 재무부 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25; 시행일: 2026.07.01)

본 시행규칙은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업무에 참여·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업무에 사용되는 서식 체계입니다. 정보·수치는 투자주가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부를 마감한 날 또는 투자 결정 권한자의 시행 중단 허가 문서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식 체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종합보고서: 서식 제01/QTDA호.
- 문서 목록: 서식 제02/QTDA호.
- 수치 대조표: 서식 제03/QTDA호.
- 정산 신청 투자비용 명세: 서식 제04/QTDA호.
- 형성 자산 가치 명세: 서식 제05/QTDA호.
- 잔여 자재·재료·설비 가치 명세: 서식 제06/QTDA호.
- 프로젝트 채권채무 현황: 서식 제07/QTDA호.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보고서(기획 프로젝트, 투자준비 프로젝트, 시공·설비설치 물량이 아직 없는 시행 중단 프로젝트용): 서식 제08/QTDA호.
- 국가 중요 프로젝트 투자자본 총정산 승인 결과 보고서: 서식 제09/QTDA호.
- 투자자본 정산 승인 결정문(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독립 소프로젝트, 공사, 독립 공사 항목용): 서식 제10/QTDA호.
- 연간 공공투자자본 사용 프로젝트 정산 현황 보고서: 서식 제11/QTDA호(본문 및 서식 포함).
-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서류 인수인계서: 서식 제12/QTDA호.

제4부: 기타 법령 정책

1. 결의 제141/NQ-CP호 (2026.06.01) —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법률의 정책에 관한 정부 결의 (공포일: 2026.06.01; 시행일: 2026.06.01)

상업 분야 4개 법률 개정 법률의 2대 정책

이에 따라, 2026년 결의 제141/NQ-CP호는 산업통상부가 2026년 보고서 제2138/TTr-BCT호, 제3390/TTr-BCT호 및 제374/BC-BCT호에서 제안한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법률의 2대 정책을 통과시켰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1: 상업, 대외무역관리, 경쟁 및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권한 이양·분권화, 행정절차 및 투자·사업 조건 개혁은 다음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 상법상 상업감정 서비스 사업조건 및 상업감정 활동의 인감 등록 절차 폐지.
- 행정절차 개혁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한 대외무역관리법 일부 내용의 개정·폐지.
- 간소성·명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법 집행상 행정절차 관련 일부 규정의 개정·보완.

제4부: 기타 법령 정책

1. 결의 제141/NQ-CP호 (2026.06.01) —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법률의 정책에 관한 정부 결의 (공포일: 2026.06.01; 시행일: 2026.06.01)

정책 2: 법령에서 비롯된 애로·장애 사항의 해소는 다음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상법 규정의 애로·장애 사항을 2개 과제군으로 해소:

- (i) 상법상 “위조품” 관련 규정의 애로·병목 사항 해소.
- (ii)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및 사업환경 촉진을 위한 상법 일부 규정의 폐지·개정;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의 애로·장애 사항 해소; 경쟁법 규정의 애로·장애 사항 해소.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하고, 당의 방침·노선 및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책 내용을 완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법률안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2026년 7월 10일 이전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www.trithucviet.com.vn

Member of
Allinial
GLOBAL®
An association of legally independent firms

종합 정리

2026년 6월에는 세금, 노동, 투자, 상업 분야에서 다수의 신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할부 구매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신규 규정, 2026년도 일부 세목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하여, 해외 파견 근로자, 프로젝트 투자자본 정산 및 상업 분야 행정절차 개혁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이 주목됩니다.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안내



호치민시:

- 835A Binh Duong 대로, Chanh Hiep동, 호치민시
전화: (0274) – 3856 219
이메일: info@trithucviet.com.vn
- 9 Phan Ke Binh 3층, Tan Dinh동, 호치민시
전화: (028) – 39118 830
이메일: hcm@trithucviet.com.vn

하노이시:

- 15 Ngo 2, Tho Thap, Cau Giay동, 하노이시
이메일: hanoi@trithucviet.com.vn

카인호아 (Khanh Hoa):

- 220 Truong Chinh, Ninh Chu동, 카인호아
핫라인: 0918 757 239

잘라이 (Gia Lai):

- 123D Tran Hung Dao, Quy Nhon동, 잘라이
핫라인: 0935 003 125

